

「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0. 30(금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주택과장 이운배)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,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~제4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및 기금의 용도, 기금의 관리·운용 사항
 - 안 제5조~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위원회 기능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

- 안 제10조~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, 회계공무원,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,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었으며,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재원) 옥외광고정비기금(이하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균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법 제10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
7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광고물 등의 정비
2. 경관개선

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
 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
 5.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
 6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의 현금계좌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균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군의 5급 이상 공무원
2.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·관리·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
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
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
2. 기금결산보고서안
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
4.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5.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,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간사 및 수당)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자가 된다.

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기금운용계획)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2.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평창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회계공무원)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
2. 기금출납원 : 옥외광고업무 담당

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기금결산)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(概況) 및 분석에 관한 서류

2.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제13조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 의 예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